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조선시대 사송 연구

김대홍\*

##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 III. 왕대별 詞訟 연결망 분석
- IV. 詞訟과 獄訟 연결망 비교
- V. 결론에 갈음하며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법사학의 연구방법에 접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선 왕조실록에서 사송으로 검색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송이 어떠한 단어들과 연결망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고, 옥송의 경우에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양자를 비교하였다.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NetMiner로 동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중심성 기반 핵심 키워드 분석을 실행하였다. 사송과 옥송으로 각각 검색되는 실록의 기사에서 각각의 연결망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사송과 옥송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백성, 원통, 억울, 지체 등의 단어는 사송과 옥송 모두에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노비나 중분, 소유, 종친, 둔전, 대송 등의 단어는 사송에서만, 재변이나 화기, 손상 등의 단어는 옥송에서만 주요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송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사송의 구체적 절차를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사송이 옥송과는 구분되었던 개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연결망 분석기법을 통해 확인된 연구결과는 사송이나 옥송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요하게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연결망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재증명하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연결망 분석이 법사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확장과 응용 정도에 따라 광범위한 사료를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분석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UNIST 기초과정부 초빙교수; hislaw21@unist.ac.kr

[주제어] 사송, 옥송, 빅데이터, 연결망 분석, 중심성

## I. 서론

빅데이터(Big Data)라는 말이 인구에 자주 회자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의미한다. 여기에 짧은 생성주기, 수치 이외의 문자나 영상을 포함한 비정형성이 빅데이터의 정의에 추가되기도 하고,<sup>1)</sup> 데이터 입출력의 빠른 속도와 데이터 종류의 다양성이 추가되기도 한다.<sup>2)</sup>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자체뿐만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강조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413책, 16만 페이지로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는다 해도 4년 3개월이 걸리는 엄청난 자료다. 조선왕조실록은 50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축적된 자료지만, 그 방대함이라는 측면을 보면 문자 그대로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이 처음 CD-ROM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적지 않았다. 어떠한 사건이나 사실, 인물도 키워드만 입력하면 1초 내에 검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sup>3)</sup>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빅데이터와 그 분석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이라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연구방법에 방대한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기법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자 개인의 기억력과 분석력에 의존하던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연구자의

- 
- 1)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양, 생성 주기(실시간 생산), 형식(수치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포괄) 등에서 과거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정용찬,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 『KISDI Premium Report』 1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참조)
  - 2) 빅데이터를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이라는 3v의 측면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Mark A. Beyer · Douglas Laney, “The Importance of ‘Big Data’: A Definition”, 2012: <https://www.gartner.com/doc/2057415/importance-big-data-definition>)
  - 3) 조선왕조실록과 인터넷시대에 관해서는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동방미디어, 2000), 266~78면 참조.

직관력, 통찰력이라는 여지를 아직은 남겨놓고 있지만,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한 발달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전체 36만 2,161건의 기사가 CD-ROM 단 3장에 담겨지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의 소개가 있었다.<sup>4)</sup>

성종 시대의 연대목차를 통해 CD-ROM 실록을 열람해 나가다가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국대전」이 들어가는 기사를 모두 검색해 보면 조선시대의 법제 상황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관련된 각종 법제 용어 등과 법전 명칭 등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검색하면 「경국대전」이 완성되기까지의 각종 법전과 법령 그리고 완성된 이후의 변천과정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분류색인에서 ‘정치-사법-법제를 선택해 조선시대 법제 관련 기사를 모두 열람할 수도 있다.

당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졌던 것은 실록 본문의 모든 단어가 어절 단위로 색인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더해지면 위에서 언급된 기사 검색, 법제 용어와 법전 명칭의 추출, 기사 재검색의 과정이 단 한 번의 분석처리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법제 분류색인에서 검색되는 7,164건의 기사를 모두 열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별 기사들이 갖는 전체 연관성을 단번에 분석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역사학의 접목은 아직은 초기단계다.<sup>5)</sup> 단순히 키워

4) 이성무, 위의 책, 278면.

5) 주성지, 「디지털 역사자료의 구축과 표준」, 『역사민속학』 no.26(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정일영, 「빅데이터를 '다루는' 역사학을 위하여」, 『역사연구』 no.31(역사학연구소, 2016); 이상국,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 디지털 역사학의 시작」, 『응용통계연구』 vol.29 no.6(한국통계학회, 2016); 강정원, 「빅데이터와 민속지」, 『민속학연구』 no.40(국립민속박물관, 2017); 김학용, 「조선왕조실록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8(한국콘텐츠학회, 2014); 정진수·김학용,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 인명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5(한국콘텐츠학회, 2011); 이정민·전은자·채정민,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무용학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 『무용역사기록학』 vol.42(무용역사기록학회, 2016); 박

드만 입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기법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의 정제과정, 그리고 분석도구 프로그램의 사용법이 아직은 낯설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사학에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되는 詞訟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왕대별로 나타나는 詞訟의 특징 및 獄訟과의 비교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선왕조실록에서 詞訟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검색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 구체적으로는 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송이 어떠한 단어들과 연결망을 형성하는지를 분석하고, 獄訟의 경우에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여 양자를 비교하였다. 사송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사송 자체의 분석이 중요한 면도 있지만, 법사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모색해 보기 위한 고려도 있었다. 사송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전·후기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검색되고 있기 때문에 왕대별로 나타나는 논의 변화의 추이를 분석해 볼 수 있고, 옥송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방대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연결망 분석은 그 중에서 빅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모델링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결망 분석에서 연결의 대상은 노드(node)이고, 연결은 링크(link)라고 한다. 노드는 고유 속성을 갖는 자료 개체를 의미하고 링크는 그러한 노드들 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며, 네트워크(network)는 곧 복수의 노드들이 연결된 구조를 의미한다. 연결망 분석은 비유하면 빅데이터라는 복잡계의 뼈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엑스레이 영상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연결망 분석은 빅데이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빅데이터 분석의 유효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텍스트 형태의 빅데이터의 경우는 연결망 분석을 활용할 경우 정량적 분석이 용이하게 되어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기존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단순한 빈도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연결의 강도까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행간읽기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sup>7)</sup>

본 연구에서 연결망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NetMiner이다.<sup>8)</sup> 국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분석 지표별로 적합한 시각화를 구현하여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상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NetMiner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중심성 기반 핵심 키워드 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키워드 지도로 시각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송 및 옥송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되는 기사를 추출하고, 기사에서 사송 및 옥송을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하여 주변 단어들과 어떠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비교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誹謗을 검색해 보면 원문에서 408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여기에 사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訴訟까지 검색대상을 확대해 보면 중복기사를 제외하고 모두 503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를 왕대별로 보면 태종 31건, 세종 39건, 성종 75건, 연산군 34건, 중종 90건, 영조 24건, 정조 22건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獄訟을 검색해 보면 실록 원문에서 394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역시 왕대별로 보면 태

6) 연결망 분석기법 내지 네트워크 분석기법에 관해서는 김용학·김영진 『사회 연결망 분석』(박영사, 2016); 이수상,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논형, 2016) 참조.

7) 한편중,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의 연결망 분석기법 적용의 의의와 연구과제』, 『사회과학연구』(10권 2호), 한국사회교육과학회, 2003, 226-9면;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4호(한국정보관리학회, 2014), 54면.

8) NetMiner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netminer.com>)

9) NetMiner의 소개는 김용학·김영진, 앞의 책, 283~92면 참조.

종 8건, 세종 34건, 성종 76건, 연산군 22건, 중종 80건, 선조 21건, 숙종 35건, 영조 12건, 정종 14건 등으로 나타난다. 사송의 경우 왕대별 분석을 위해서는 20건 이상의 기사가 검색되는 왕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사송과 옥송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사송과 옥송이 모두 많이 검색되는 세종대, 성종대, 중종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10)</sup>

NetMiner 프로그램의 경우 실록의 원문 한자 자체를 분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원문에서 사송과 옥송이 검색되는 기사를 먼저 추출하고 국역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sup>11)</sup> 사송의 경우 사송 이외에 ‘소송’이나 ‘송사’로 국역된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사송으로 통일하였다. 옥송의 경우에는 ‘옥사와 소송’으로 오역된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獄滯訟淹’처럼 옥사와 사송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옥송으로 바로 잡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일자의 실록 기사에서 사송이나 옥송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송이나 옥송에 관한 내용만을 추출하였다.

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분석을 시행할 때는 각 왕대별로 실록 기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출현 빈도수 기준을 달리 하여 되도록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셋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기사의 수가 많은 성종대나 중종대는 빈도수 기준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왕대에는 빈도수 기준을 낮추어서 비슷한 수준의 노드셋과 노드유형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석상 의미 없는 키워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실록 기사에서는 “신의 생각으로는”라는 문구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신’과 ‘생각’이 중심 키워드로 등장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10) 주요 왕대별 사송 및 옥송의 연결망은 <부록>에 첨부.

11) 실록의 원문 및 국역은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 및 국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 Ⅲ. 왕대별 詞訟 연결망 분석

실록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訴訟을 포함하여 詞訟으로 503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심성 기반 핵심 키워드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사송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과 주요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결, 백성, 원통, 억울, 대전, 관원, 수령, 장래원, 한성부, 지체, 적체, 체직, 기한, 번다, 많다, 말다, 결단 등의 단어가 사송을 중심으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왕대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태종대를 살펴보면, 사송과 소송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모두 31건으로 사송과 함께 주요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단어는 中分과 呈狀, 노비, 기한, 법, 억울 등이었다. 억울이나 원통은 다른 왕대의 기사에서도 사송과 함께 연결망을 이루고 있으므로, 중분과 정장, 노비, 기한, 그리고 법이 태종대 사송 기사의 특징적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現身과 對論도 사송 관련된 기사에서 연결망을 이루고 있었다.

태종대 사송의 연결망을 보다 자세히 보면, 중분-노비, 중분-법과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기한 및 정장과도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분은 태종 13년(1413) 9월 1일에 제정된 노비중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송당사자에게 노비를 똑같이 나누어주도록 한 것을 말한다.<sup>12)</sup> 실록 기사에서는 노비중분법이 노비 사송을 간소하게 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주 언급되기도 하였다.<sup>13)</sup>

중분은 다시 법과도 연결되는데, 이는 노비중분의 원칙을 법으로 세

12)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9월 1일.

13)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9월 20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11월 11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12월 30일;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1414) 2월 10일.

워서 제도화하려 한 것과 연관된다.<sup>14)</sup> 그렇지만 중분이라는 방법은 양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고, 사송의 적체가 심했던 상황에서 나온 고식의 해결책이었다. 즉,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양 당사자에게 노비를 반반씩 나누도록 한 것이 항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고, 태종 이후에는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정장의 경우에는 기한을 사이에 두고 사송과 연결되어 사송-기한-정장으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노비중분법이 시행된 9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정장을 제출한 경우에만 노비중분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록 기사에서는 기한 이후에 급작스레 정장을 제출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니,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를 면밀히 분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sup>16)</sup>

한편 현신과 대론도 사송과 관련해서 연결망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실록 기사에서 9월 1일 이전에 정장을 올린 경우에는 현신하지 않거나 대론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분하는 것을 허락한 것과 연관되는 것인데, 노비중분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sup>17)</sup> 즉, 원고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현신하거나 피고가 응소하여 대론하지 않는 경우는 스스로 반성함이 있으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까지 노비를 중분하여 결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세종대는 사송과 소송으로 39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역시 원통과 억울이 사송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종친-종부시, 노비

14)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9월 1일.

15) 실제 다른 왕대에서 중분은 사송과 어떠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노비중분법에 관해서는 임상혁,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理論의 展開」(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29~131면 참조.

16)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9월 20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11월 11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12월 30일.

17)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9월 20일;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1413) 12월 30일.



-소유, 판결 등도 사송과 주요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친-종부시의 경우에는 세종 21년(1439) 6월 20일 종친의 사송을 종부시에서 관할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한 것에서부터 사송과의 연결성이 확인된다.<sup>18)</sup> 이에 따라 두 달 후인 8월 26일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종친의 규찰을 위한 17개조의 사목을 보고한다.<sup>19)</sup> 종친의 규찰에 관한 사목이었지만, 종친의 사송은 종부시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종친의 非理訴訟 역시 종부시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종부시에서 종친의 비리소송을 핵실하지 않을 경우 사헌부에서 핵실하여 과죄하도록 하는 등 사목의 상당 부분이 종친의 사송과 관련된 내용이었다.<sup>20)</sup>

사송이 노비-소유와 연결망을 이룬 것은 세종대에도 노비의 소유권 문제가 사송의 주요 대상이었던 것과 관련된다. 실록 기사에서는 힘이 약한 사람들로부터 노비를 빼앗아 소유하고 있는 자, 문서를 위조하여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자, 아직 분배되지 않은 노비와 누락된 노비를 은닉해서 전부 소유하고 있는 자, 분할해서 소유해야 할 노비를 점거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 전당 잡힌 노비를 영구히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이 법을 어지럽히며 사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언급으로 확인된다.<sup>21)</sup>

판결이 사송과 연결망을 이룬 것은 세종이 관리의 사송 판결에 대해서 자주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관리들이 사송의 판결에 근만한지, 혹은 오결이 있는지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22)</sup> 다음에 검토할 성종대와의 차이점은 성종대는 사송과 판결이

18)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1439) 6월 20일.

19)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1439) 8월 26일.

20) 종친의 규찰에 관해서는 김동근, 「조선 초기 宗簿寺의 성립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제76집(조선시대사학회, 2016), 109~18면 참조.

21) 《세종실록》 46권, 세종 11년(1429) 10월 27일.

22)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1429) 4월 7일;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1435) 2월 8일.

연결망을 이루고 판결에 관한 언급에 일정한 방향성이 나타나서 다시 다른 연결망을 형성하였지만, 세종대는 그러한 방향성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종대의 경우는 사송과 소송으로 75건의 기사가 검색되는데, 중종대 다음으로 많은 건수이다. 주요한 연결망으로는 역시 원통과 억울이 있었고, 판결-지체, 屯田-임시, 상피-이송 등이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외에 아비-첩도 사송과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송이 판결과 연결되면서 다시 지체와 연결망을 이룬 것은 성종대 실록 기사에서 사송의 판결이 지체되는 폐해에 대해서 논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요한 것으로는 사송을 담당한 관사에서 시일을 끌며 판결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이를 사헌부에 신소하면 의례 소장을 물리치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기사가 확인되고, 장례원의 판결사에게 근래에 사송이 많이 지체되는 것은 관리들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기사도 확인된다.<sup>23)</sup> 이외에 經國大典의 決訟조<sup>24)</sup>에 규정된 大事 30일, 中事 20일, 小事 10일의 기한을 지적하면서 이는 사송의 지체를 없애기 위한 조문이라고 언급한 기사도 확인된다.<sup>25)</sup>

둔전-임시가 연결망을 형성한 것은 사송의 목적물이 田地인 경우 務停 동안에는 둔전에 임시로 소속시켰다가 추분을 기다려 판결해 주도록 한 것과 관련된다.<sup>26)</sup> 애초의 취지는 세력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23)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1479) 11월 12일; 《성종실록》 124권, 성종 11년(1480) 12월 23일. 이러한 기사들은 원통과 억울이 관사-사헌부와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과는 관련된다.

24) 《經國大典》 刑典 決獄日限: 凡決獄〈死罪〉限三十日 中事〈徒·流〉二十日 小事〈笞·杖〉十日 ... 〈詞訟同〉; 決獄日限 조이지만, 실록 기사에서는 決訟조로 언급되어 있다. 決訟조라고 한 것은 ‘詞訟同’의 법문에 따라 해석한 것으로, 詞訟에 대해서도 동조문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大典後續錄》에서는 決訟日限조라고 표기되기도 하였다.

25) 《성종실록》 295권, 성종 25년(1494) 10월 19일.

26) 이른바 假托屯田法으로 이에 관해서는 박병호, 『李朝時代의 不動産登記法 小考』, 『서울대학교 법학』 vol.2 no.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0), 45~7면 참조.

전지를 차지하고 務開 동안에는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시일을 끌다가 춘분이 되어 務停이 되면 다시 그 땅을 경작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지방 수령들이 해당 전지를 私用하기 위해서 公田인 둔전에 소속시키고 판결을 일부러 지체하거나, 간사한 무리들이 관리와 결탁하여 거짓으로 사송을 제기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해 오던 전지를 둔전에 소속시키려 하는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던 것이다.<sup>27)</sup>

상피-이송이 사송과 연결망을 이룬 것은 사송의 공정함을 위해서 상피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사송의 실무는 그러하지 못함을 논의한 것과 관계된다.<sup>28)</sup> 즉, 상피 때문에 사송을 타사에 이송한 경우에도 해당 관리가 인정에 구애되어 처음에 상피되었던 관리가 체임되기를 기다려서 다시 이전 관사로 이송하는 문제가 논의되거나,<sup>29)</sup> 한성부나 장례원의 사송을 담당하는 관리가 서로 상피가 있을 경우 대개 사헌부로 이송하는데 이는 사헌부의 직무 분장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논의되었다.<sup>30)</sup>

연산군대의 경우는 사송과 소송으로 35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기사의 건수로만 보면 39건인 세종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망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는 연산군대에 실록 기사에서 사송이 많이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그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산대에도 역시 원통과 억울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외에 백성 및 많다, 한성부가 사송과 주요 연결망을 형성

27)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1479) 11월 12일; 《성종실록》 111권, 성종 10년(1479) 11월 16일.

28) 상피제도에 관해서는 김영석,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相避親」,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참조.

29) 《성종실록》 98권, 성종 9년(1478) 11월 23일.

30) 《성종실록》 268권, 성종 23년(1492) 8월 5일.

하고 있었다. 많다가 사송과 연결되고 다시 백성과 연결되는 것은 지방 수령에 대한 논의에서 해당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아서 사송 역시 많다는 언급과 관련되어 있다.<sup>31)</sup> 백성은 원통과도 역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어서 사송이 백성의 원통과 연관되고 있었음이 다시 확인된다.<sup>32)</sup> 한성부의 경우에는 사송과 연결되면서 번거롭다와도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한성부의 업무 중 사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록 기사에서는 한성부의 사송이 번거롭기 때문에 관원을 자주 바꾸는 것이 불가하다거나 그에 적합한 인물을 제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났다.<sup>33)</sup>

중종대의 경우는 사송과 소송으로 모두 90건의 기사가 검색되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고 있다. 주요한 연결망으로는 원통이나 억울 이외에 大典, 代訟 - 첩, 합당 - 체직, 관원 - 말다, 적체, 많다, 장례원 등을 들 수 있다.

대전이 연결되는 것은 사송의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사족 부녀의 대송에 관한 대전의 규정이 크게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經國大典의 囚禁조에 의하면 사족 부녀는 본인의 사송을 아들·손자·사위·조카·노비로 하여금 代訟케 할 수 있었다.<sup>34)</sup> 사족 부녀가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는 이졸이나 여러 사람 속에서 사송의 곡직을 다투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상의 첩의 경우에도 사족 부녀에 관한 대전의 조문을 준용하여 대송을 허용할 것인지에 있었다.

31)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1497) 7월 5일; 《연산군일기》 33권, 연산 5년(1499) 5월 18일.

32) 《연산군일기》 23권, 연산 3년(1497) 5월 14일;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1497) 8월 20일;

《연산군일기》 41권, 연산 7년(1501) 9월 19일.

33) 《연산군일기》 43권, 연산 8년(1502) 3월 5일; 《연산군일기》 47권, 연산 8년(1502) 12월 11일;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1503) 1월 23일.

34) 《經國大典》 刑典 囚禁: <○士族婦女凡詞訟許子·孫·婿·姪·奴婢中代之>.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재상의 첩으로서 재상이 사망한 이후에 家母가 된 경우는 처가 있으면서 첩이 여럿 있는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첩이라도 재상의 첩은 재판정에 출석하는 것이 역시 미편하다는 이유도 제시되었다. 명분과 실질과의 대립이 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논의의 결론은 대전의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이전과 같이 재상의 첩에게는 대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맺어졌다.<sup>35)</sup>

합당-체직, 관원-말다가 사송과 연결된 것은 사송을 담당할 관원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중종대 실록 기사에서는 지방 수령이나 판결사의 체직 사유로 사송이 언급되는 기사가 여럿 확인된다.<sup>36)</sup> 대개는 사송을 판결하는 직임을 맡기에는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직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적인 비리가 있거나, 나이가 연로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은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서 사송이 번다하기 때문에 사송을 판결하는 직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 등으로 언급되었다.

이외에 적체나 많다는 문자 그대로 사송이 많거나 적체되어 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고, 많다는 다시 사송의 지체가 많다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례원이 사송과 연결되는 것은 장례원 관리의 체직 사유를 언급하는 것 이외에도 사송 업무와 관련하여 장례원의 직제를 논의한 것과도 관련된다. 즉, 장례원은 사송을 담당하는 관사로 관원이 자주 갈리면 사송이 지체되기 때문에 소속 관원의 임기나

35)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1509) 11월 15일.

36)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1516) 4월 6일; 《중종실록》 55권, 중종 20년(1525) 8월 25일;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1526) 3월 10일;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1526) 7월 13일; 《중종실록》 58권, 중종 21년(1526) 12월 15일; 《중종실록》 61권, 중종 23년(1528) 4월 16일;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1529) 7월 5일;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1529) 7월 7일; 《중종실록》 71권, 중종 26년(1531) 7월 27일;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1533) 2월 20일; 《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1533) 3월 25일; 《중종실록》 77권, 중종 29년(1534) 4월 3일; 《중종실록》 80권, 중종 30년(1535) 10월 4일; 《중종실록》 82권, 중종 31년(1536) 10월 10일; 《중종실록》 92권, 중종 35년(1540) 1월 5일;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1543) 2월 13일; 《중종실록》 101권, 중종 39년(1544) 1월 18일.

출사에 더욱 철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언급되었다.<sup>37)</sup>

끝으로 영조대와 정조대를 살펴보면, 사송과 소송으로 각각 24건, 22건의 원문 기사가 검색된다. 주요 연결망은 영조대와 정조대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사송이 수령과 연결되고 다시 제수나 의망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사송과 관원의 인사문제가 연관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중종대의 합당-체직, 관원-말다의 연결망과 유사한 것이다.

영조대의 연결망을 먼저 보면, 사송을 담당하는 관사의 관직을 역임한 다음에 수령에 제수하도록 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무겁게 하고자 한 것인데, 사송의 직임에 제수되자마자 수령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sup>38)</sup> 정조대의 경우에도 수령의 제수 요건과 관련하여 사송의 직임을 역임한 자여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었다.<sup>39)</sup> 그리고 영조대와 정조대 모두 사송을 담당하는 관리의 근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IV. 詞訟과 獄訟 연결망 비교

실록에서 獄訟으로 검색되는 기사는 394건이다. 여기에서는 사송과

37) 《중종실록》 20권, 중종 9년(1514) 2월 1일;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1516) 4월 13일; 《중종실록》 56권, 중종 21년(1526) 3월 10일; 《중종실록》 74권, 중종 28년(1533) 3월 25일; 《중종실록》 91권, 중종 34년(1539) 6월 25일.

38) 《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1729) 7월 19일; 《영조실록》 38권, 영조 10년(1734) 6월 2일; 《영조실록》 51권, 영조 16년(1740) 3월 20일;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1743) 1월 28일.

39) 《정조실록》 9권, 정조 4년(1780) 5월 11일; 《정조실록》 21권, 정조 10년(1786) 1월 16일;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1791) 1월 17일;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1798) 12월 20일.

의 비교를 위해서 사송과 옥송이 모두 많이 검색되는 세종대, 성종대, 중종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심성 기반 핵심 키워드 분석을 시행해 본 결과 옥송은 백성, 원통, 억울, 지체, 업체, 많다, 형조, 형벌, 재변, 和氣, 손상 등의 단어와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송으로 검색되는 세종대 및 성종·중종대의 기사가 사송으로 검색되는 동시기의 기사와 다른 점은 왕대별로 연결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사송의 경우에는 세종·성조·중종대에 모두 동일하게 발견되는 연결망도 있었지만, 왕대별로 논의되었던 사송의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서로 다른 연결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세종대에는 종친-종부시가, 성종대에는 둔전-임시가, 중종대에는 대송-첩이 다른 왕대와는 구분되어지는 사송의 연결망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달리 옥송의 경우에는 연결의 강도는 다르더라도 연결망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세종대, 특히 성종대와 중종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개 옥송을 두고 어떠한 언급이 있을 때, 구체적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논한 것보다는 전형적인 투의 언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변이나 화기, 손상은 사송과는 구분되면서 옥송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종대의 경우 민생의 질고와 옥송의 절차가 한 데 있는 것인데, 옥송이 지체되어 비좁은 옥에 갇힌 사람이 많으니 원망을 부르고 화기를 상하게 한다고 한 기사,<sup>40)</sup> 원망이 일어나면 화기가 손상되고 화기가 손상되면 재변이 이르게 되므로, 이에 옥송이 번거로워진다고 한 기사,<sup>41)</sup> 죄 있는 자가 벗어나고 죄 없는 자가 옥에 걸리어서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지 못하여 화기를 손상하게 한다고 한 기사<sup>42)</sup>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1430) 6월 10일.

41) 《세종실록》 85권, 세종 21년(1439) 4월 19일.

성종대의 경우는 지난 밤 바람의 변괴로 큰 나무가 뽑혔으니 벼 역시 모두 쓰러졌을 것인데, 이는 옥송에 원통하게 얽혀진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기사,<sup>43)</sup> 농사철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옥송을 살피지 못한 원한이 맺혀서 재앙을 부른 것이라는 기사,<sup>44)</sup> 역시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백곡의 싹이 타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옥송이 지체되어 화기를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한 기사,<sup>45)</sup> 근자에 가뭄이 이어져 기근이 잇따르는 것은 옥송을 오래도록 지체시켜 백성이 원통함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 기사,<sup>46)</sup> 가뭄과 같은 재변은 반드시 백성들의 원통한 일에 연유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옥송을 처리하는 사이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한 기사,<sup>47)</sup> 며칠 전의 지진은 옥송을 담당하는 관리가 인명을 손상시켰거나 옥사의 청단을 게을리 하여 재변을 부른 것이라고 한 기사,<sup>48)</sup> 겨울철을 당하여 내린 큰 비와 천둥번개는 옥송에 공평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 기사<sup>49)</sup>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종대의 경우에도 재변이 이토록 심한 것은 옥송 사이에서 연유된 것이니, 근신하는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기사,<sup>50)</sup> 우박이 내리고 천변과 재이가 중첩되는 것은 옥송이 정체되어 억울함을 펴지 못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 기사,<sup>51)</sup> 재변은 반드시 옥송의 억울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疏放해야 한다고 한 기사,<sup>52)</sup> 재변을 그치게 하는 방도로 옥송을 지체하지 않는 것보다 앞세울 것이 없다고 한 기

42) 《세종실록》 107권, 세종 27년(1445) 1월 18일.

43) 《성종실록》 20권, 성종 3년(1472) 7월 20일.

44) 《성종실록》 78권, 성종 8년(1447) 3월 27일.

45) 《성종실록》 141권, 성종 13년(1482) 5월 21일.

46) 《성종실록》 190권, 성종 17년(1486) 4월 26일.

47) 《성종실록》 253권, 성종 22년(1491) 5월 18일.

48) 《성종실록》 274권, 성종 24년(1493) 2월 11일.

49) 《성종실록》 283권, 성종 24년(1493) 10월 19일.

50) 《중종실록》 21권, 중종 9년(1514) 11월 12일.

51) 《중종실록》 22권, 중종 10년(1515) 5월 4일.

52) 《중종실록》 25권, 중종 11년(1516) 5월 8일.



사,<sup>53)</sup> 일변과 지진이 하루 안에 잇달아 일어난 것은 침체된 옥송이 많고 백관이 해이한 탓이라고 한 기사,<sup>54)</sup> 겨울의 우레는 옥송이 지체되어 화기를 손상한 것이 재변을 부른 것이라고 한 기사,<sup>55)</sup> 梟는 반드시 원통한 기원이 있어 일어나는 것으로 옥송과 수인이 많은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한 기사,<sup>56)</sup> 하늘의 재변은 오직 사람이 부르는 일이고 보면 반드시 옥송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라고 한 기사,<sup>57)</sup> 며칠 전의 흰 무지개는 재앙의 조짐인데, 이는 옥송의 판결을 시장에서 장사하듯 하기 때문이라고 한 기사,<sup>58)</sup> 백성의 원망과 하늘의 노여움은 두려운 것이니, 옥송과 정사를 평상시에 강구하여 인심에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기사<sup>59)</sup>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옥송이 재변, 화기의 손상과 전형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난 실록 기사를 보면, 한재나 수재, 우박, 우레, 지진과 같은 재변의 원인을 화기의 손상에서 찾았고, 다시 화기가 손상된 원인을 정치의 잘못이나 국왕의 근신하지 못함, 관리의 해이함 등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옥송의 지체나 공정하지 못함이 재변의 주요한 원인으로 자주 지적되었기 때문에 옥송과 재변, 화기가 강한 연결망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옥송을 재변, 화기와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천문과 기상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자연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른바 天人合一의 재이관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성종대와 중종대에 이러한 기사가 많이 발견되는 것은 사림이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고, 재이관이 조정에서 국왕과 신료 모두에게 긴요한 정치논리로 활용되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53) 《중종실록》 30권, 중종 12년(1517) 11월 16일.

54) 《중종실록》 41권, 중종 16년(1521) 3월 12일.

55) 《중종실록》 46권, 중종 17년(1522) 10월 7일.

56)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1527) 6월 3일.

57) 《중종실록》 70권, 중종 25년(1530) 12월 3일.

58) 《중종실록》 89권, 중종 34년(1539) 1월 30일.

59) 《중종실록》 94권, 중종 36년(1541) 3월 15일.

있다.<sup>60)</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송과 옥송은 각각 오늘날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위시한 여러 법전의 조문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되어 규정되고 있었다.<sup>61)</sup> 그렇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민사적인 면과 형사적인 면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최근의 연구에서도 조선시대 사송과 옥송이 어느 정도 구분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제시되었다.<sup>62)</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성종·중종대에 사송과 옥송으로 각각 검색되는 실록 기사에서 나타나는 연결망은 양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먼저 사송과 옥송의 유사점을 보면, 백성 및 원통, 억울, 지체, 엄체, 많다 등의 단어가 사송과 옥송 모두에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사송과 옥송을 모두 백성의 원통함이나 억울함과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었고, 사송과 옥송의 수가 많아서 지체나 엄체가 문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사송과 옥송의 차이점으로는 우선 재변과 화기의 연결망을 들 수 있다. 재변과 화기는 옥송에서만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었고, 사송에서는 그러한 연결망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변의 원인을 사송이 아닌 옥송의 억울함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물론 재변의

60) 이에 관해서는 이상호,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종기 재이관의 특징」, 『국학연구』 제21집(한국국학진흥원, 2012); 경석현, 「16세기 ‘天文’기록과 災異論-朝鮮王朝實錄 天文기록의 재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61) 예를 들어 經國大典의 決獄日限조를 보면 ‘詞訟同’이라는 법문을 확인할 수 있다. ‘詞訟同’은 獄訟의 日限에 관한 조문을 詞訟에도 준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決獄, 즉 獄訟이 詞訟과 구분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62) 심희기, 「朝鮮時代 刑事·民事一體型 裁判事例의 分析」,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2호(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우병창, 「조선시대 민사소송제도」,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한상권, 「조선시대 詞訟 재판의 두 양태-해남윤씨가 소장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제44권(한국고문서학회, 2014) 등 참조.

원인을 두고 옥송과 사송 모두의 적체를 지적하거나, 사송의 지체로 신원하지 못한 원한이 화기를 상하게 하고 재변을 일으킨다고 한 기사도 발견된다.<sup>63)</sup> 그렇지만 대부분의 실록 기사에서는 재변 발생과 화기 손상의 원인으로 옥송이 주요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연결망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송과 옥송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논의의 양상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송에서 강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었던 종친-종부시, 둔전-임시, 대송-첩 등의 단어는 옥송에서는 특별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단어들은 대개 왕대별로 사송의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되던 단어들이었다. 즉, 종친-종부시는 세종대에 종친의 사송과 관련하여 종부시의 사송관할 문제를, 둔전-임시는 성종대에 사송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전지를 임시로 둔전에 소속시키던 문제를, 대송-첩은 중종대에 재상의 첩의 사송과 관련하여 대송의 허용여부 문제를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었고, 그에 따라 사송과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 역시 사송이 옥송과 구분되어서 논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송에서는 한성부·장례원이 주요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옥송에서는 형조가 주요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송과 옥송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다. 이는 사송과 옥송을 관할하는 관사가 단순히 대전의 법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도 구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록 기사에서 나타나는 사송과 옥송 각각의 특징적 연결망은 대전의 규정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조정에서의 논의에서도 사송과 옥송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었음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63) 《중종실록》 24권, 중종 11년(1516) 4월 6일; 《중종실록》 10권, 중종 5년(1510) 3월 27일.

## V. 결론에 같음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송 및 옥송으로 검색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NetMiner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심성 기반 핵심 키워드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각 왕대별 사송에 관한 기사에서는 사송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단어들이 역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송과 옥송의 연결망 비교에서는 원통, 억울과 같이 사송과 옥송 모두에서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단어도 있었지만, 종부시나 둔전, 대송과 같은 단어는 사송과 관련된 기사에서만, 재변이나 화기와 같은 단어는 옥송과 관련된 기사에서만 주요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송이나 옥송에 관한 기존연구의 주요 내용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 연구방법인 연결망 분석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분석이 사료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연결망 분석기법이 법사학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에 의한 분석으로 1,000여 건에 가까운 실록 기사의 전체 열개를 단시간 내에 정확성 높게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의 법사학 연구방법을 법문의 해석과 적용 사례에 중심을 두는 방법과 법제의 정립 및 이후의 변천에 중심을 두는 방법으로 구분한다면 연결망 분석기법은 후자에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사료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그 사이의 연결망을 발견하고 연결강도를 분석하는 것은 법제의 전체 구조 및 변천의 흐름을 명료하게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기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송과 옥송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논지를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

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된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록에서 明律(584건)이나 大典(3,291건)으로 검색되는 기사를 추출하여 연결망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律(18,599건)이나 刑(27,639건)으로 검색되는 기사를 추출하여 연결망을 분석해 볼 수도 있다. 詞訟에 관한 분석도 決訟(316건), 聽訟(291건), 聽理(391건)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정밀한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시기의 기사를 모두 추출하여 조정 전체에서 법제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졌는지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전처리 또는 정제과정이다. 明律의 경우 대부분 大明律을 의미하지만, 잡과의 明律을 의미하는 경우나 律을 밝힌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일자의 실록 기사에서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어느 범위까지 기사 내용을 추출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한 데이터 정제과정의 일부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역된 실록 기사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한자어가 다르게 번역된 경우 이를 처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제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법사학 연구에 접목시켜 보려 한 본 연구의 시도가 단순한 소개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쓸모 있는 것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연구자 본인으로서는 판단이 힘든 부분이다. 다만,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은 더욱 정밀하게 개발될 것이고, 연결망 분석도 보다 깊이 있는 행간읽기가 가능하도록 개발될 것이다. 따라서 사료 전체의 열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고, 객관적이고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결망 분석기법의 장점은 법사학 연구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글을 마친다.

## ■ 참고문헌

《經國大典》, 규장각자료총서 법전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

NetMiner 홈페이지(<http://www.netminer.com>)

강정원, 「빅데이터와 민속지」, 『민속학연구』 no.40, 국립민속박물관, 2017.

경석현, 「16세기 ‘天文’기록과 災異論 - 朝鮮王朝實錄 天文기록의 재인식 -」,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동근, 「조선 초기 宗簿寺의 성립과 기능」, 『조선시대사학보』 제76집, 조선시대사학회, 2016.

김영석,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相避親」,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김용학·김영진, 『사회 연결망 분석』, 박영사, 2016.

김학용, 「조선왕조실록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8, 한국콘텐츠학회, 2014.

박병호, 「李朝時代의 不動産登記法 小考」, 『서울대학교 법학』 vol.2 no.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0.

박진영·선우연·오혜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조선왕조실록 내 왕의 통치 스타일 분석」,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6, 한국정보과학회, 2016.

심희기, 「朝鮮時代 刑事·民事一體型 裁判事例의 分析」,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우병창, 「조선시대 민사소송제도」,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상국,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한국사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 디지털 역사학의 시작」, 『응용통계연구』 vol.29 no.6, 한국통계학회, 2016.

이상호,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종기 재이관의 특징」, 『국학연구』 제21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이성무,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동방미디어, 2000.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4.

\_\_\_\_\_,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논형, 2016.

이정민·전은자·채정민,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무용학 자료의 빅데이터 분석」, 『무용역사기록학』 vol.42, 무용역사기록학회, 2016.

임삼혁,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理論의 展開」,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정용찬, 「빅데이터 혁명과 미디어 정책 이슈」, 『KISDI Premium Report』 12-0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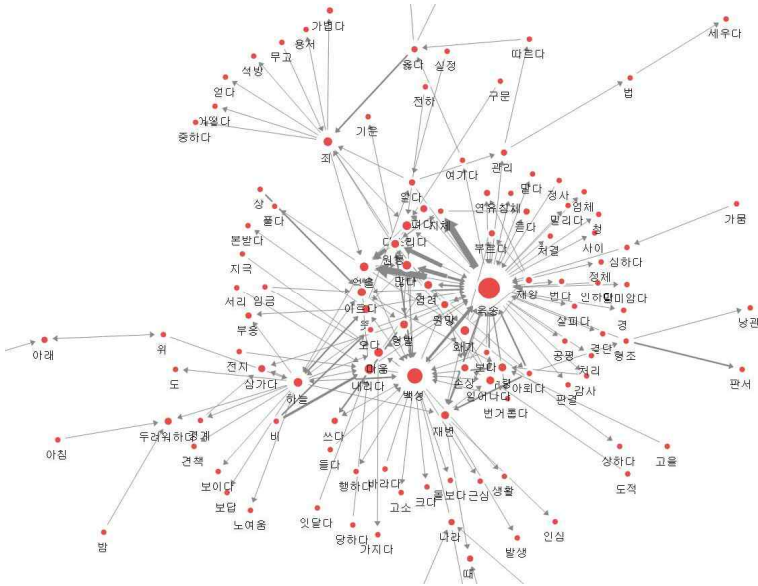
- 정일영, 「빅데이터를 ‘다루는’ 역사학을 위하여」, 『역사연구』 no.31, 역사학연구소, 2016.
- 정진수·김학용, 「고구려, 백제, 신라 왕조실록 인명 네트워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5, 한국콘텐츠학회, 2011.
- 주성지, 「디지털 역사자료의 구축과 표준」, 『역사민속학』 no.26,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 한관중,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의 연결망 분석기법 적용의 의의와 연구과제」, 『사회과교육연구』 10권 2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3.
- 한상권, 「조선시대 詞訟제판의 두 양태 - 해남윤씨가 소장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 『고문서연구』 제44권, 한국고문서학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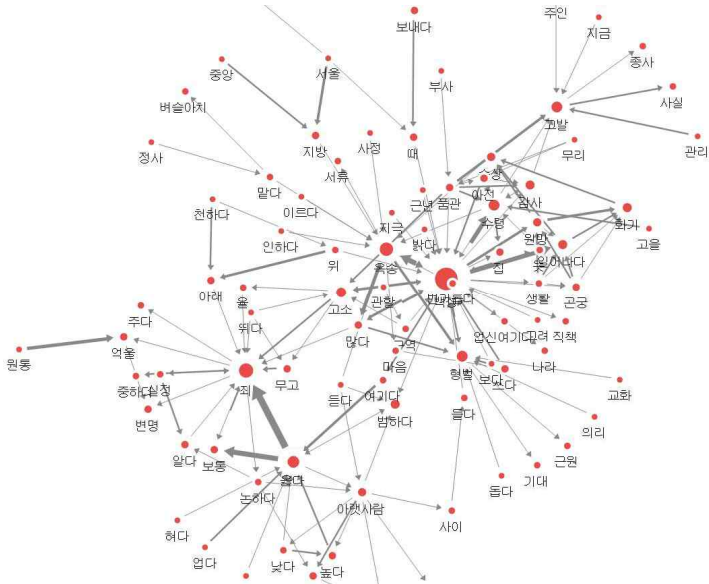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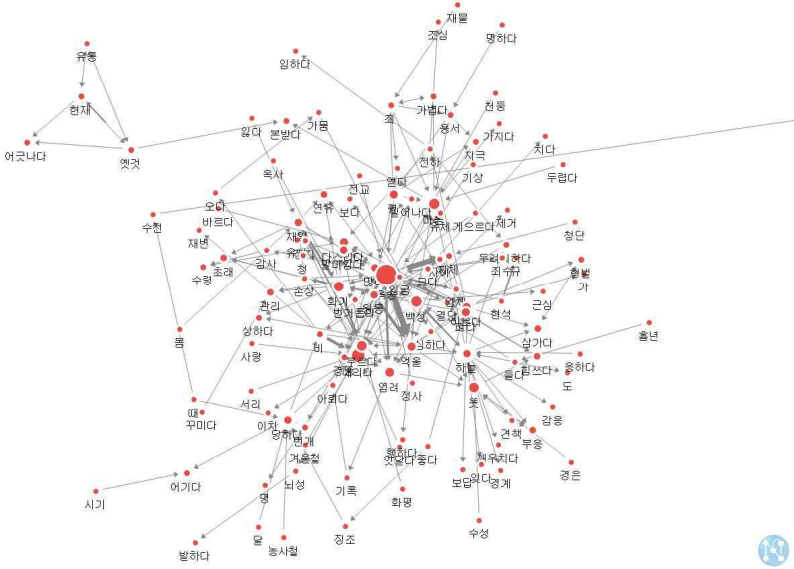
<부록 5> 전체 옥송 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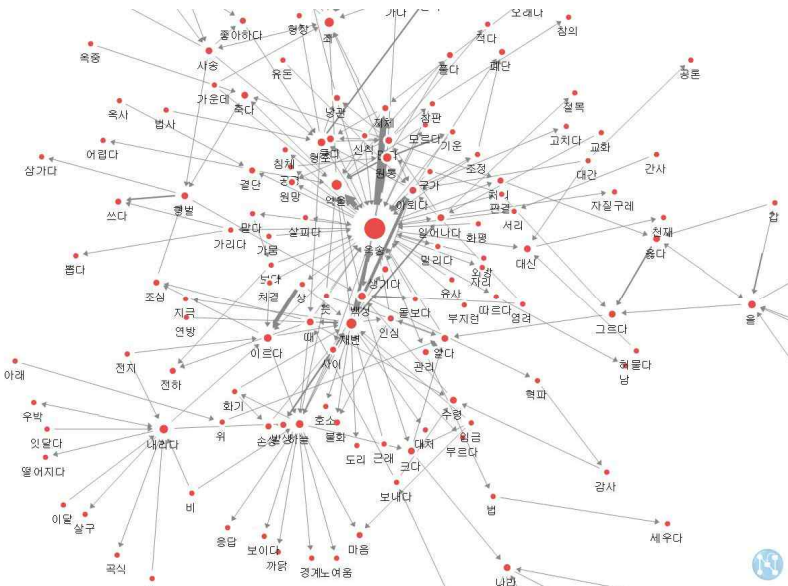
<부록 6> 세종대 옥송 연결망



<부록 7> 성종대 옥송 연결망



<부록 8> 중종대 옥송 연결망



<Abstract>

## A Study on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of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Big Data Analysis

Kim, Dae Hong\*

In this study, I applied the Big Data analysis technique to the research method of Legal History. Specifically, I analyzed the articles that were related to the civil procedure(sasong) in the Joseon Dynasty Annals using the network analysis technique. I conducted the same analysis on the articles that were related to the criminal procedure(oksong) in order to compare both. The program used for the network analysis is NetMiner that provides the keyword analysis based upon the centrality and the network visualization function. I have found in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in the Joseon Dynasty formed different semantic networks. It means that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s wer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in the Joseon Dynasty. Using the network analysis technique, I could identify the findings on the legal procedures in the Joseon Dynasty that were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ies rather than proving new facts. This shows that the network analysis can be used appropriately in the research of Legal History to analyze vast historical data more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

\*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General Studies, UNIST.

**[Key Words]** civil procedure(sasong), criminal procedure(oksong), Big Data, network analysis, centrality

